

#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307호
- 발의자 : 김춘곤 의원 등 12명
-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 II. 제안이유

- 서울시는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디지털 웰니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는 디지털 웰니스 관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시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 관련 사업 범위 및 민관협력체계,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디지털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 III. 주요내용

- 가. “디지털 웰니스”를 ICT 기반의 건강·복지·생활산업 전반으로 정의  
(안 제2조)

- 나. 시장은 디지털 웰니스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행정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안 제3조)
- 다. 디지털 웰니스 산업과 연계된 관광상품 및 콘텐츠의 발굴 · 육성, 홍보 · 마케팅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라.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안 제7조)
- 마. 기업 · 학계 ·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기 협의회운영 근거 명시(안 제10조)

#### **IV.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정보통신기술진흥법」

##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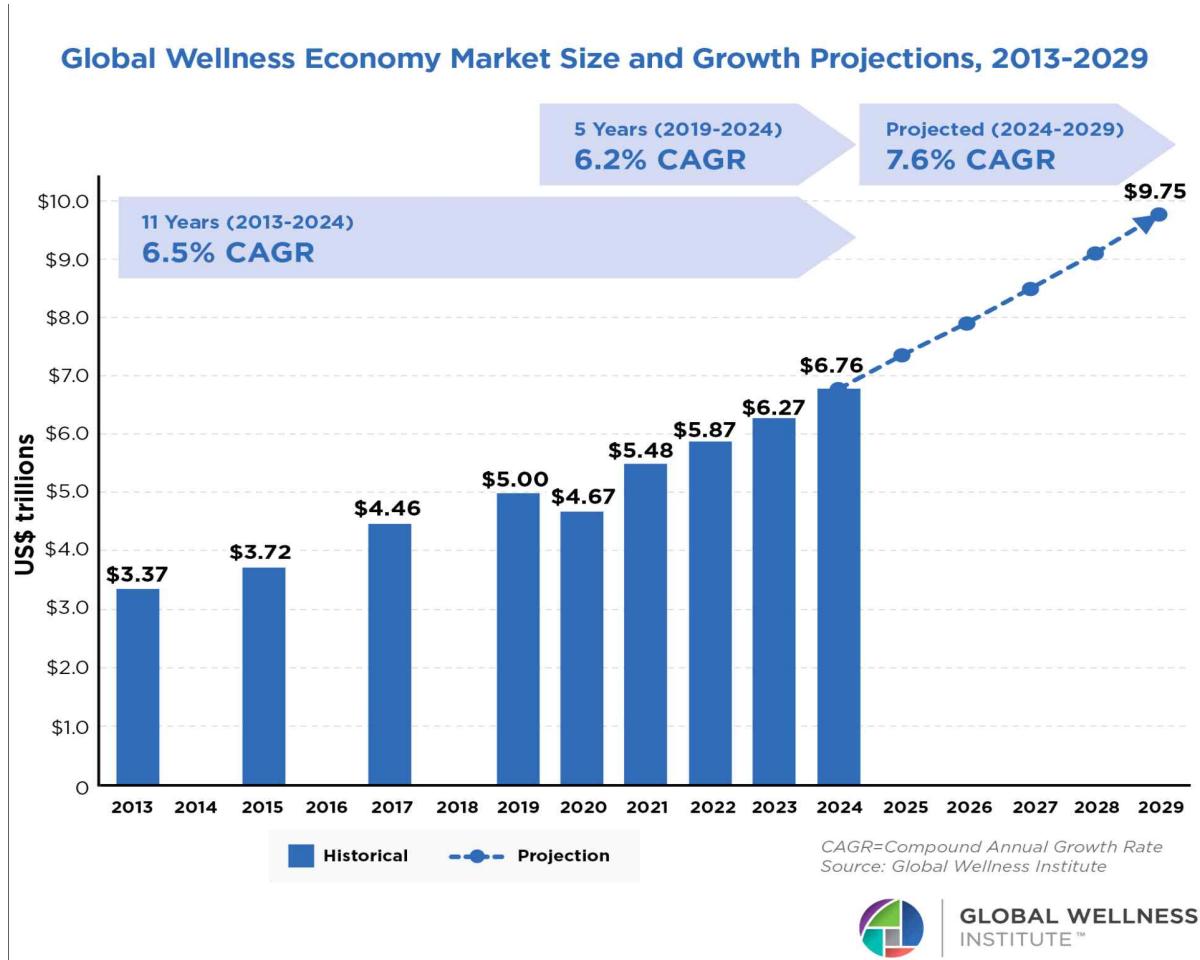
### 1.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디지털 웰니스 산업을 서울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됨.

### 2. 조례안의 입법배경

-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주력했던 1세대에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집중했던 2세대를 지나 ‘건강한 삶(wellness)’을 추구하는 3세대로 발전하고 있음.
- 그리고 ‘건강한 삶’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 정서적인 부분 등 전체적인 삶의 안녕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포괄적 개념으로 인해 법적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진 않은 상태임.
- 한편 이러한 웰니스의 영역에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 과학, 의학, IT 분야 등이 융합되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건강관리 개념으로 ‘디지털 웰니스’가 등장하였음.
- 디지털 웰니스 산업은 웨어러블 기기와 앱을 이용한 신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질병의 예방적 관리가 가능하여 건강관리와 치료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GWI(Global Wellness Institute)의 2024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웰니스 시장 규모는 2019년 5조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6.2%씩 성장해 2024년 6조 8천억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029년까지 9조 8억 달러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 예측됨.



- 또한 한국 디지털헬스 산업협회의 ‘2024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헬스산업 규모는 5조 7천억원 규모로, 총 투자유치금액은 3조 724억원, 종사자 규모는 44,201명으로 조사됨.

#### <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분야별 추정 매출 규모 >

구분	총합	의료 부문	웰니스 부문	인프라 부문
매출액 (비율)	6조 4,930억원	3조 7,907억원	1조 4,210억원	1조 2,813억원

- 이러한 시장 상황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지원하는 법률을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 혁신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애플 등 주요 기업도 스마트워치를 비롯하여 다양한 탈·부착식 디지털 웰니스 장치를 생산·판매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한편 서울시는 이러한 국내외 산업의 변화에 맞춰 홍릉강소특구<sup>1)</sup>를 ‘글로벌 바이오·의료 메디클러스터’로 도약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관련 기업의 창업지원과 기술이전, 투자유치 등을 이어오고 있음.

**< 홍릉 강소특구 개요 >**

- 위치: 서울 성북구 안암동·정릉동과 동대문구 회기동 일대(약 1.38km<sup>2</sup> 규모)
- 지정: 2020년 8월
- 특징: 기술핵심기관 (KIST,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을 중심으로 서울바이오허브, BT-IT융합센터 등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

**◦ 1단계 사업(2021년~2025년) 성과**

- 총사업비: 210억 원(국비 154억, 시비 56억)
- 과기부에서 주관한 2022년도, 2024년도 연차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획득.
- 2025년 4월 최종 종합평가 결과 2단계 특화발전 지원에 대한 타당성 확보.
- GRaND-K 창업학교 운영을 통해 총 251개 스타트업 발굴, 426억 원의 투자유치 지원.

-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홍릉 강소특구의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그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특화 발전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2026년부터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1단계 사업에서 구축된 우수한 원천기술과 인적 자원, 그리고 연구중심병원의 임상시험 인프라를 바탕으로 바이오의료 분야 혁신 창업과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한층 더 고도화할 계획임.

---

1)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지정한 소규모 고밀도 연구개발 집약지로, 대학·출연연 등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술사업화와 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함.

◦ **홍릉 강소특구 2단계 사업(2026년~2030년)**

◦ **총 사업비:** 200억원 내외

◦ **주요 사업**

① **첨단 바이오헬스 중심 특화 전략**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의 융합화 경향을 반영한 첨단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기술사업화 촉진과 혁신생태계 조성

② **광역 혁신 생태계 조성**

서울AI허브(양재), 서울 마곡 R&D센터 등 시 거점시설 및 바이오·의료 분야와 연관된 전국의 다른 특구, 바이오·의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로 광역 혁신 생태계 조성

③ **벤처스튜디오 도입과 인재 양성**

벤처스튜디오(Venture Studio) 모델을 도입해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장 진입까지 전 주기 창업지원 체계의 강화 및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인력 및 창업 인재 1,900명 양성

④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R&BD 과제와 규제혁신협의체를 운영

⑤ **오픈이노베이션과 글로벌 진출 지원**

국내외 기업과 창업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로 공동연구,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지원

- 이 밖에도 서울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생활 속 걷기 문화를 조성하는 ‘손목닥터 9988’ 사업을 시행하는 등 일부 자체 사업을 시행 중임.
- 다만 서울시는 디지털 웰니스와 관련한 연구개발 및 창업지원이 홍릉 특구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웰니스 사업도 관련 산업의 육성이 아닌 ‘복지성 성격’으로 시행되는 등 한계가 있음.
- 이에 동 조례안은 디지털 웰니스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과 지원의 근거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 **3. 주요 조문 검토**

#### **가. 조문 구성 체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안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디지털 웰니스 산업의 추진 및 지원과 연계형 관광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사업의 위탁과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해 규정하는 등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면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대체적으로 준수하고 있음.

#### **나. 용어의 정의 등(안 제1조~제4조)**

- 안 제2조는 ‘디지털 웰니스’를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하여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제품·서비스·콘텐츠 산업을 포함한 경제·사회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웰니스’는 1959년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의학박사인 헐버트 던(Halbert L.Duun)은 웰니스를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 이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는 웰니스를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이끄는 활동, 선택 및 라이프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해보면 웰니스는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개인적인 선택과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나아가 ‘디지털 웰니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 안 제2조의 정의 중 하단에 해당하는 ‘관련 제품·서비스·콘텐츠 산업을 포함한 경제·사회적 활동’은 오히려 웰니스 산업으로서의 관련 제품과 서비스 콘텐츠 산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디지털 웰니스의 개념으로 정의하기에 부적절하며, 따라서 안 제2조 디지털 웰니스의 정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 ‘디지털 웰니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능정보 기술이나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건강관리, 연구개발 및 사후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디지털 웰니스와 디지털 헬스케어는 그 개념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다. 사업추진과 지원사항(안 제5조~제6조)

- 안 제5조는 디지털 웰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디지털 웰니스
  - ▶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과 콘텐츠 개발, ▶ 인프라 구축 및 개선, ▶ 홍보 마케팅 및 인식 제고, ▶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 컨설팅·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규정함.

- 현재 디지털 웰니스 산업은 건강뿐만 아니라 피트니스,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이러한 디지털 웰니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홍보 마케팅을 통한 인식을 제고하며, 국내외 물적·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디지털 웰니스 산업의 저변 확대와 산업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 하겠음.
- 다만 안 제6조 ‘디지털 웰니스 연계형 관광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서울시의 별도 조례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동 조례안에서는 이를 삭제하는 것이 규정의 중복과 중복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라.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8조)

- 안 제7조 및 제8조는 디지털 웰니스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동 자문위원회는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디지털 웰니스 연계형 관광산업 지원 및 운영·평가, 관련 산업 실태 조사 실시 및 활용 등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디지털 웰니스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현재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므로, 성격이 유사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가 동 조례안 제7조에 따른 디지털 웰니스 자문 위원회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디지털 웰니스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⑤(생략) <u>⑥ &lt;신설&gt;</u>	제7조(디지털 웰니스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⑤(제정안과 동일) <u>⑥ 시장은 디지털 웰니스 사업과 관련하여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u>

##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디지털 웰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학계·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협의회나 네트워크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안 제5조제1항제4호에는 이미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디지털 웰니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추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안 제10조는 규정이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디지털 웰니스 산업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디지털 웰니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웰니스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콘텐츠 개발
2. 디지털 웰니스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디지털 웰니스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디지털 웰니스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5. 디지털 웰니스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 6. 디지털 웰니스 산업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 7. 디지털 웰니스 컨설팅 ·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 8.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웰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입법조사관	연락처
이성찬	2180-8061